

2026년



비상장주식평가 특강
가업상속공제 해설
정기주주총회 실무

김완일 세무사
김주석 세무사
신천수 법무사



발간도서 바로보기

(사) 국세동우회



절세특강 동영상 보기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세법과 상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놓쳐 주식관리와 상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낭패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세동우회에서는 「100만 중소기업 법인 세무컨설팅 핵심 3가지」를 주제로 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책자에는 ▲비상장주식 평가(김완일 세무사) ▲가업상속 해설(김주석 세무사) ▲정기주주총회 실무(신천수 법무사)의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강의도 함께 제작하여 국세동우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국세동우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본 책자와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여 100만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 그리고 합리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동우회 회장 김덕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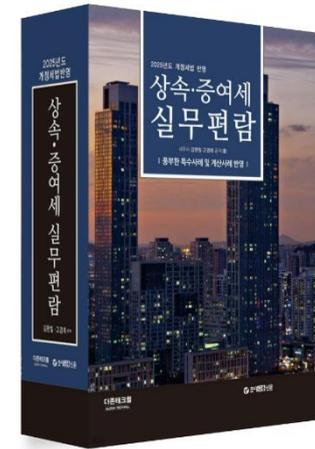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주식평가연구원장

저서



2025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2025 상속 증여세 실무
편람

주요경력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영화조세통람 (2025년)
- 상속 증여세 실무편람, 이택스코리아 (2025년)



제1절 재산평가 일반원칙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요건

제3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4절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평가

1. 시가의 적용

◆ 시가의 정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상증법 §63 ②) .

◆ 평가기간 내의 사례가액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

○ 매매사례가액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 :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특수관계 인내의 매매가액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유통하지 아니하는 경
우

㉡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다음 중 적은 금액 미만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외)
㉠ 액면가액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해당 금
액

㉢ 3억원

1. 시가의 적용

◆ 평가기간 내의 사례가액

- 감정가액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 :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가능
 - 소급감정방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
- 수용·공매·경매가액
 - ① 원칙 :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 :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 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② 예외 : 경매 또는 공매가액의 시가 적용
 - ㉠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취득
 - ㉡ 비상장주식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frac{1}{100}$ 미만 또는 액면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1. 시가의 적용

◆ 평가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 거래가액

평가기간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 : 전 6개월~후 3개월)]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②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

개월)
-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1. 시가의 적용

◆ 유사사례가액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상증령 §49 ④).

- 해당 평가대상재산에 대한 매매·감정·보상·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사례가액의 적용 배제.

- 유사성의 판단기준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
-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pm 5\%$ 이내인 주택
-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pm 5\%$ 이내인 주택

(나) (가)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신고일 이후의 유사사례가액 적용 배제

주식평가 실무특강

제 1절
재산평가 일반원칙

제 2절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조
건

제 3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4절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평가

1. 시가의 적용 순서

- ①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 : 전 6개월~후 3개월)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사례가액.
- ② 당해 평가대상재산과 면적·종류·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 등
- ③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 : 전 6개월~후 3개월)] 및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 또는 유사사례가액
- ④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 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사례가액 적용 법리

◆ 시가의 적용법리 (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두42121 판결)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2.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적용

비상장주식의 매매가격 등에 관한 시가 논쟁은 매매가격 등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보다 저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높은 가격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선호함으로써 발생하는데, 매매가격 등은 대부분 상대방과의 가격상당 과정에서 정상가격과 달리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인 점, 시가는 정상가격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그 차이가 발생함이 일반적인 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은 회사의 실제 가치 보다 높게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충적 평가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사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3.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 적용 한계

- ◇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용 한계
 - 대법원 판례의 입장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2007.01.16.선, 2006두17055판결).

1. 보충적 평가방법 개요

- ◆ 시가 : 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사례가액 적용,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액 적용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 ① 일반적인 법인 (원칙)

$$1\text{주당 평가액} = \frac{1\text{주당 순손익가치} \times 3 + 1\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2}{5}$$

- ② 부동산과다보유법인*

$$1\text{주당 평가액} = \frac{1\text{주당 순손익가치} \times 2 + 1\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3}{5}$$

1주당 평가액 = Max [가중평균치, 순자산가치의 80%]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자산총계의 50%인 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 의한 장부가액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자산총액에서 제외
 -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과 같은 무형고정자산의 합계액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1. 보충적평가방법 개요

◆ 1주당 순손익가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① 일반적인 법인 (원칙)

$$1\text{주당 평가액} = \frac{1\text{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text{순손익가치환원율 (10\%)*}}$$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1\text{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frac{A \times 3 + B \times 2 + C \times 1}{6}$$

A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B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C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주당 순자산가치

$$1\text{주당 순자산가치} = \frac{\text{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text{발행주식총수}}$$

1. 보충적평가방법 개요

◆ 예외적 방법 (순자산가치 평가)

-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평가대상법인 청산절차 진행 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의 주식 등
-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의 주식 등
- ③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
- ④ 법인설립시부터 확정된 존속기한 중 잔여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 비교평가(2026.02. 개정)

Max(①가중평균액, ②순자산가치)

- ①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 ②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2. 순손익가치의 계산

◆ 의의

순손익가치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기업의 수익흐름을 기업가치로 환원 미래 수익흐름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서는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

◆ 계산방식

순손익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액, 손금불산입액 등을 가감하여 계산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

○ 원칙

$$1\text{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frac{A \times 3 + B \times 2 + C \times 1}{6}$$

A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B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C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 순손익가치의 계산

◆ 추정이익에 의한 경우

○ 의의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
- 예외 : 업종 변경 또는 일시적·우발적 사건 발생으로 비정상적인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미래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

○ 적용방법

- 1주당 추정이익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
기
위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 둘 이상의 세무법인, 회계법인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2. 순손익가치의 계산

◆ 추정이익에 의한 경우

○ 적용대상

- ① 최근 3년간 자산수증이익 등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50% 초과
- ② 합병 등이 있었거나 주요 업종의 변경
- ③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산정을 위한 주식가액 산정
- ④ 1년 이상 휴업 사실이 있는 법인
- ⑤ 유형자산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50% 초과
- ⑥ 주요 업종의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
- ⑦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순손익가치의 계산

◇ 추정이익에 의한 경우

○ 적용요건

- 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 발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③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 ④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

○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방법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

2. 순손익가치의 계산

◇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 적용요건

$$1\text{주당 순손익액} = \frac{\text{순손익액}}{\text{발행주식총수 또는 환산주식수}}$$

○ 환산주식수

① 증자에 따른 환산주식수 계산

$$\text{환산주식수} = \frac{\text{증자 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times (\text{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text{증자주식수})}{\text{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② 감자에 따른 환산주식수 계산

$$\text{환산주식수} = \frac{\text{감자 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times (\text{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text{감자주식수})}{\text{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 순손익가치의 계산

◆ 순손익액의 계산

○ 의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세법 목적상 세무조정한 부분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 각사업연도소득

각사업연도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익금총액에
서

손금총액을 차감하는 것은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 해 법 인 의
순자산에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차감 전의 소득

2. 순손익가치의 계산

◇ 순손익액의 계산

○ 가산항목

- 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 ②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 ③ 기부금 및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이월손금 산입액
- ④ 외화환산이익 미반영액
- ⑤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순손익가치의 계산

◇ 순손익액의 계산

○ 차감항목

- ①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② 손금융인되지 않는 공과금
- ③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
- ④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납부세액
- ⑤ 기부금한도초과액
- ⑥ 접대비손금불산입액
- ⑦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 ⑧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특례기부금
- 한도초과액
- ⑩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접대비손금불산입액
- ⑪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 ⑫ 법인세 등의 총결정세액
- ⑬ 외화환산손실 미반영액
- ⑭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 ⑮ 업무용 승용차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
- *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순손익가치의 계산

◆ 유상 증·감자에 따른 자본이익 가감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자본이익을 가감함.

① 유상증자한 경우의 자본이익

유상증자한 신주에 대한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 주식수 × 10%

② 유상감자한 경우의 자본이익

유상감자한 주식에 대해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 주식수 × 10%

* 사업연도 중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한 경우는 월할 계산

2. 순손익가치의 계산

◆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 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상증통 63-56...10).

◆ 충당금 또는 준비금의 일시 환입시의 순손익액 계산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

3. 순자산가치의 계산

◆ 의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66조의
규 정 에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
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다(상증령§55 ①).

- 1주당 순자산가치 = $\frac{\text{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text{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영업권평가액

평가액 = Max(①, ②)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 ②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3. 순자산가치의 계산

◆ 가산항목

① 평가차액

②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상의 유보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

제외대상 유보현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관련 유보금액
- 무형고정자산 (개발비) 관련 유보금액
- 제충당금관련 유보금액
- 제준비금관련 유보금액

③ 유상증자금액 등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평가할 때에는 평가기준일까지의 유상증자
액

3. 순자산가치의 계산

◇ 차감항목

① 선급비용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자산에서 차감한다.

② 개발비

③ 이연법인세자산

④ 증자일 전 잉여금 유보금액

증자일 전 잉여금의 유보금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은 제외(상증통 63 - 55...6) .

3. 순자산가치의 계산

◆ 부채총액의 계산

○ 재무상태표상 부채가액

부채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을 적용

→ 부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계산

- 사채할인(할증) 발행차금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않음.
-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장기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당해 장기미지급이자는 부채에 가산하지 않음.

○ 가산항목

① 부채로 미계상된 법인세 등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는 부채에 가산한다(상증칙 §17의 2 3호 가목).

②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과 상여금 등

적용대상 \ 잉여금 처분결의 일	상속개시일 이전	상속개시일 이후
비상장주식평가	부채에 가산 (평가대상법인 : 미지급금)	해당 없음
배당금·상여금의 귀속	피상속인의 배당금·상여금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상속인의 배당금 등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3. 순자산가치의 계산

◆ 부채총액의 계산

○ 가산항목

③ 퇴직금추계액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전부를 부채에 가산한다(상증칙 §17의 2 3호 다목).

*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처리방법(서사 - 785, 2004.6.3.)

퇴직급여총추계액에서 퇴직보험예치금 및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예) 퇴직급여충당금 (총누계액)	10,000	
퇴직보험예치금		(5,000)
국민연금전환금		(1,000)
		<hr/>
		4,000

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은 부채에 있어서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함.

3. 순자산가치의 계산

◆ 부채총액의 계산

○ 가산항목

④ 확정된 비용

종업원의 사망에 따라 지급 확정된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 및 총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 가산(상증칙 §17의2 4호 가목).

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것은 부채로 인정한다(상증칙 §17의2 4호 나목).

⑥ 기타 가산채무

법인이 변제할 부채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 임원의 단기채무(가수금)도 포함된다(재삼 46014 - 815, 1996.3.28.).

3. 순자산가치의 계산

◆ 부채총액의 계산

○ 차감항목

① 제준비금 및 총당금

평가기준일 현재의 퇴직급여총당금, 대손총당금, 단체퇴직보험총당금 등의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상증칙 §17의2 4호).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과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도 부채에서 제외된다.

② 외화환산대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으로 계상한 외화환산대는 부채에서 제외한다.

③ 이연법인세부채

④ 보증채무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재산 01254 - 2342, 1989.6.28.).

3. 순자산가치의 계산

◇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재산상속 46014 - 1829, 1999.10. 13.).

◇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 출자지분이 10% 이하인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상증령 §54 ③).

○ 출자지분이 10%를 초과한 경우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순자산가치의 계산

◆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 일반법인

$$1\text{주당 평가액}(X) = \frac{\text{자기주식 이외의 순자산가액} + (\text{자기주식수} \times 1\text{주당 평가액} X)}{\text{총발행주식수}} \times 2 + \frac{1\text{주당 순손익액}}{0.10} \times 3 \times \frac{1}{5}$$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1\text{주당 평가액}(X) = \frac{\text{자기주식 이외의 순자산가액} + (\text{자기주식수} \times 1\text{주당 평가액} X)}{\text{총발행주식수}} \times 3 + \frac{1\text{주당 순손익액}}{0.10} \times 2 \times \frac{1}{5}$$

3. 순자산가치의 계산

◆ 계산사례 (1) _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 일시보유목적

가나산업(주)은 일시보유 목적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1,500주를 취득하였다.

이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부동산 과다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인이다.

재무상태표 다음의 사례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라. 단위:천원

자산금액	금액	부채와자본	금액
제자산	453,750	제부채	75,000
합계	453,750	자본금	150,000
		잉여금	249,750
		자기주식	△21,000
		합계	453,750

- ① 발행주식총수 : 30,000주
- ② 자기주식수 : 1,500주
- ③ 1주당 순순이익액 : 3,027원

풀이

$$1\text{주당 평가액}(X) = \left\{ \frac{378,750,000 + (1,500\text{주} \times X)}{30,000} \times 2 + \frac{3,027}{0.10} \times 3 \right\} \times \frac{1}{5}$$

$$5X = 0.1X + 25,250 + 90,810$$

$$X = 23,685$$

3. 순자산가치의 계산

◆ 계산사례 (2) _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 소각목적

가나산업(주)의 자기주식이 소각목적으로 보유중이다.

1주당 평가액을 산출하라.

다만,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재무상태표

단위:천원

자산금액	금액	부채와자본	금액
제자산	453,750	제부채	75,000
합계	453,750	자본금	150,000
		잉여금	249,750
		자기주식	△21,000
		합계	453,750

- ① 발행주식총수 : 30,000주
- ② 자기주식수 : 1,500주
- ③ 1주당 순손익액 : 3,027원

풀이

$$1\text{주당 평가액}(X) = \left\{ \frac{378,750,000}{30,000 - 1,500} \times 2 + \frac{3,027}{0.10} \times 3 \right\} \times \frac{1}{5}$$

$$X = \{13,289 \times 2 + 30,270 \times 3\} \times 1/5$$

$$X = 23,477\text{원}$$

3. 순자산가치의 계산

◆ 영업권의 평가금액의 가산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 영업권평가액을 가산한다.

◆ 발행주식총수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적용

-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 목적의 자기주식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
-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 : 발행주식총수에 포함

4. 영업권의 평가

- ◆ **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초과이익을 자본환원율로 현재가치로 평가한
- ◆ **평가방법**

[(최근 3년간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10%))×3.7908 (기간 5년, 이자율 10%의 정상연금
현가계수)]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적용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란 순자산가액계산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 영업권포함 전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기자본 = Max (①, ②)
 ① 자기자본 = 사업소득금액/자기자본이익률
 ② 자기자본 = 수입금액/자기자본회전율

4. 영업권의 평가

◆ 영업권상당액에 포함되어 매입한 무체재산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9 ②).

◆ 순자산가치 평가대상 중 영업권 가산 구분

○ 영업권 가산대상

- ① 주식비율이 80%이상 또는 잔여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 ②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 영업권 가산 제외 대상

- ①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 ③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 법인

5.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의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분보유비율에 따라 할증을 적용한다.

◆ 할증평가의 대상 및 범위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거나, 기업공개중인 법인 주식,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제60조 제2항 (사례가액)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5.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 할증평가 제외사유

- ①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주식
- ②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 ③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 전 6월, 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 ④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⑤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 ⑥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까지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 ⑦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 확정
- ⑧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등 외의 자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⑨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주식
- ⑩ 이경권이 없는 주식

1. 의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적절한 평가가액의 시가 적용을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2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 (2004.12.23.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별로 설치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이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다.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 배당할인방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의 적용과 함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던 과거의 제한을 삭제하고 일반법인도 적용할 수 있게 함.

2. 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

◆ 평가기간 이외의 사례가액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
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납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시가에 포함시킬지 여부 심의

◆ 부실감정기관의 지정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
분의 80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감정에 대한 심의

2. 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

○ 비상장주식 평가가액 심의

①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가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② 현금흐름할인방법

향후에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③ 배당할인방법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 인 율 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④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그 밖에 위에서 예시한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pm 30\%$ 범위

가업상속공제 해설



강사 : 김주석 세무사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세무법인 센트릭



- ✓삼일인포마인
- ✓김주석, 김정수 공저
- ✓577페이지



- ✓광교이택스
- ✓임채문, 김주석 공저
- ✓1,899페이지

가업상속공제 해설

Q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세금 상속세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항목 중 **가업상속공제**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이상 영위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주식) 또는
개인사업체(토지/건물등)를
상속받고,
임원 및 대표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따라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규정
(상증법 제18조의2)

가업영위기간	공제 한도금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가업상속공제 연혁 및 동향

I. 가업상속공제액 확대

- 2007년 이전: 1억원
- 2008년 : 30억원
- 2008년-2011년: 100억원
- 2012년-2013년: 300억원
- 2014년-2022년: 500억원
- 2023년 이후: 600억원

II. 공제요건 완화

- 2인 이상 상속 가능
- 중견기업도 공제가 가능

III. 사후관리 완화

- 사후관리기간 축소: 10년 ⇒ 5년
- 종업원수 유지 ⇒ 종업원수 or
총급여액
- 업종유지: 세분류내 ⇒ 대분류내

가업상속공제 관심, ^{허용} 적용 증가

○ 가업상속공제 신고인원 및 금액 확대

- 상속세 결정기준

2019년 88명, 2,363억원

2021년 110명, 3,415억원

2023년 190명, 8,377억원 (5년동안 공제액 3.5배 증가)

Q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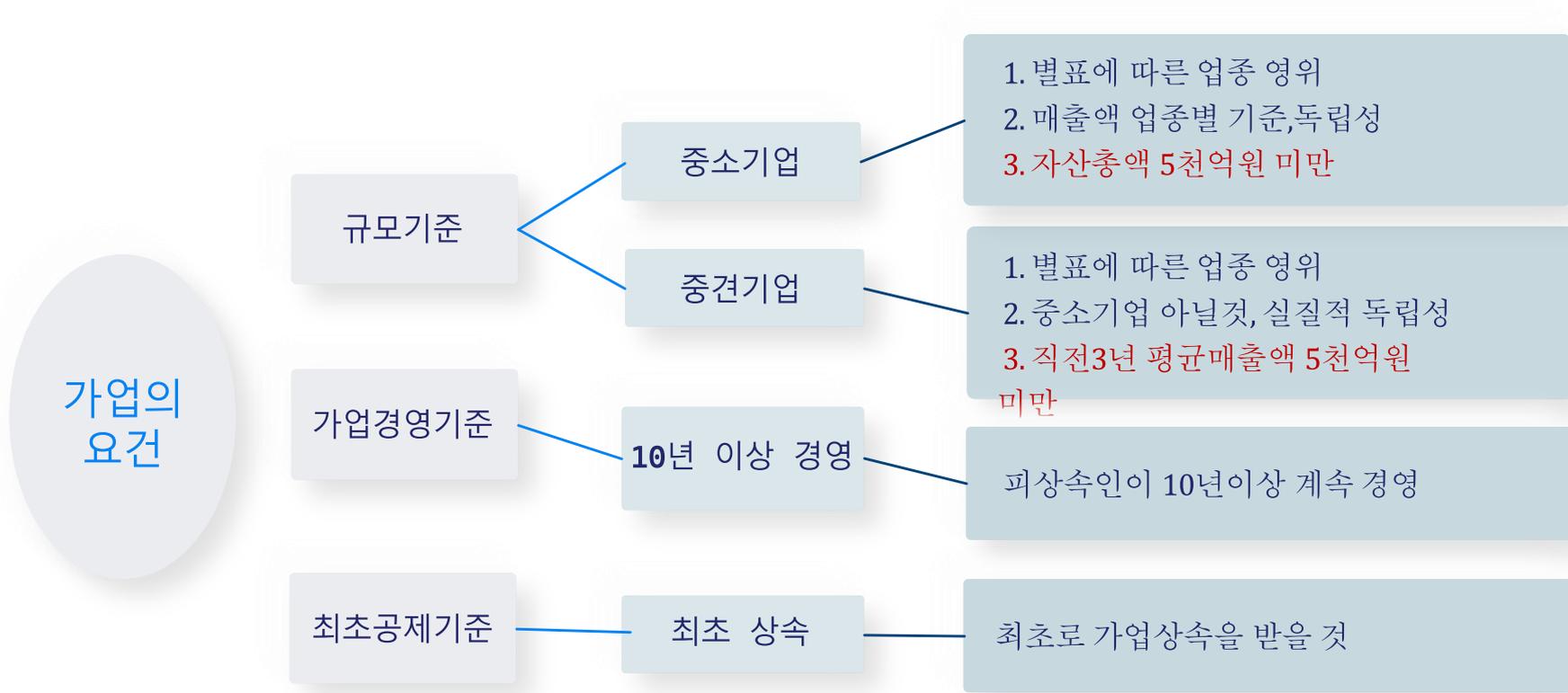
가업상속
공제 요
건

1. 가업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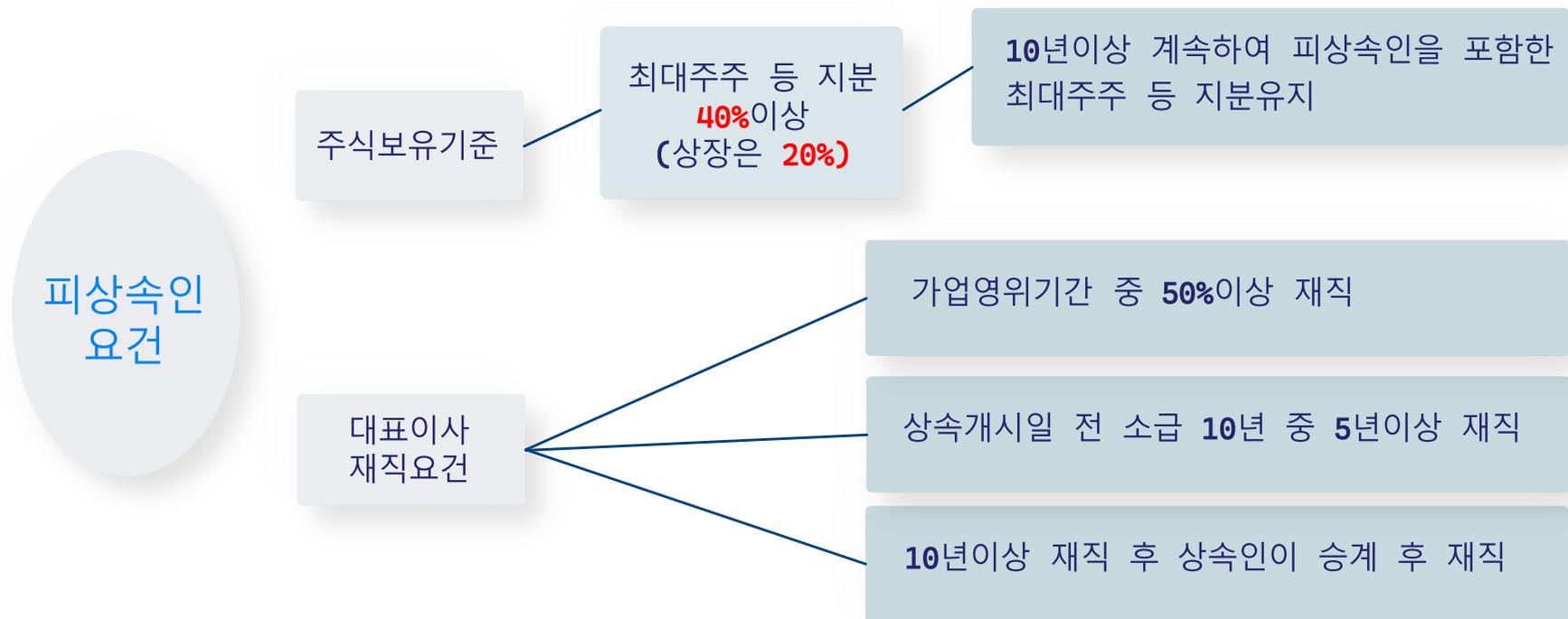
2. 피상속인 요건

3. 상속인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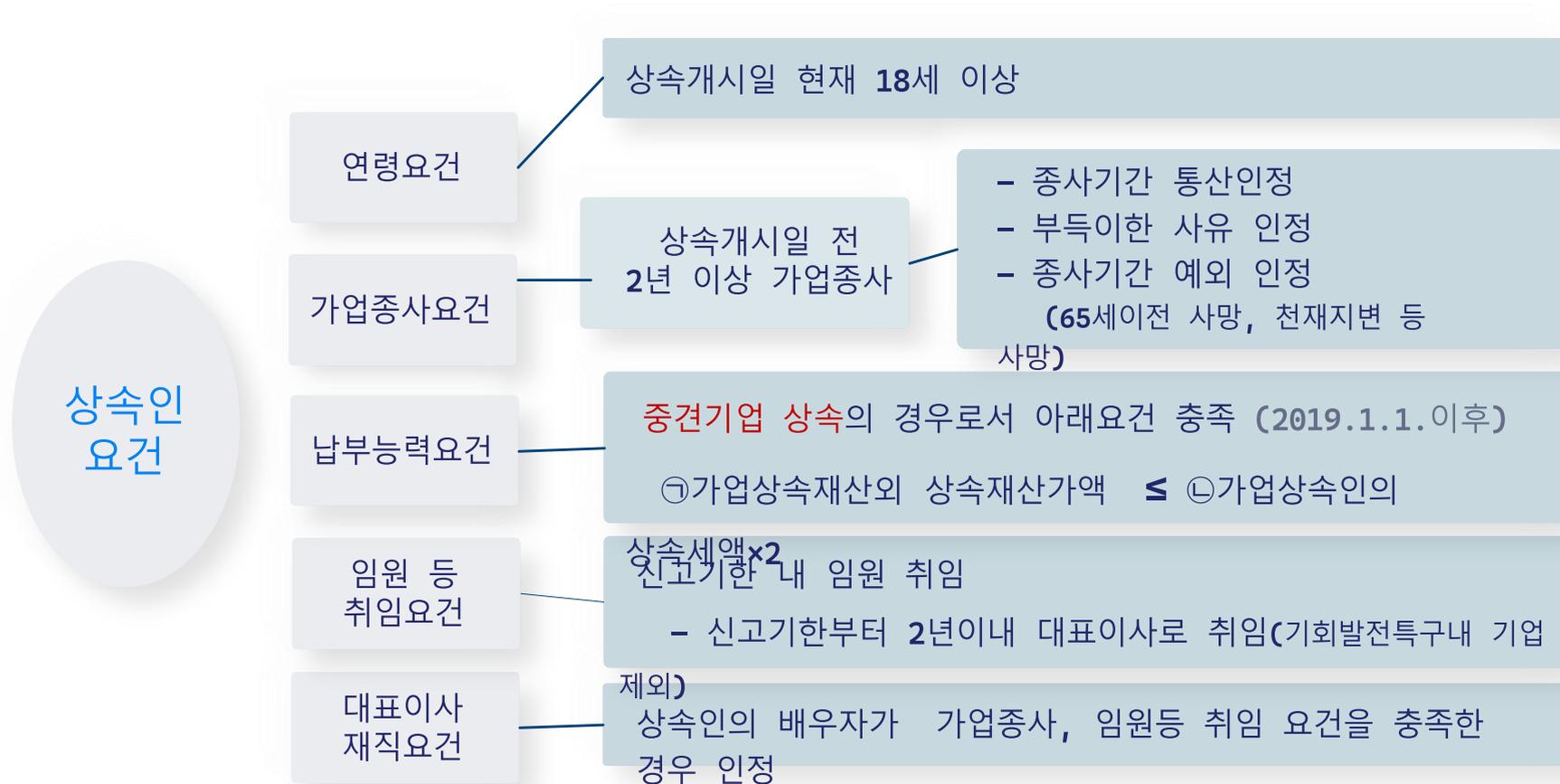
1. 가업의 요건



2. 피상속인의 요건



3. 상속인의 요건



Q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별도로 있나요?

상증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만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표준산업분류상)	가업 해당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업 중 일부만 해당
광업	전체
제조업	전체 (자기가 제조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일부업종 포함)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운수업	여객운송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제외, 무형재산권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유아교육기관,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개인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기타 타법률에 따른	물류산업, 자동차정비, 의료기관운영, 관광사업 , 백년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 등

Q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중소기업만 해당 되나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1) 상증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대분류 내에서 변경된 경우도 합산, 2025년 백년가게 추가)

2)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업종별 매출액기준과 독립성기준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함

1) 상증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제3호의 독립성기준을 충족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3)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022.12.31 이전은 4천억)

Q 그 외에 가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10년 이상 가업 영위 요건과 **최초공제 (1번만 허용)** 요건이 있습니다

- 10년 이상 가업영위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까지 10년이상 계속하여 사실상 경영
- 최초공제 요건
 - 공동으로 경영하던 자(부부, 형제) 들이 각각 사망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그 중 1명에 대해서만 공제 허용 (단, 그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는 경우는 다시 공제 가능)

Q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에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나요?

주식보유요건과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친족 등의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10년 이상 계속하여
 - 40% [상장주식은 20%] 이상 보유
- **피상속인이 가업영위 기간중 다음과 같은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체 가업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재직할 것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기간 재직할 것
 - 10년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할 것

Q

자녀인 **상속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

● 상속인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2. 2년 이상 가업 종사 (2년간 계속이 아니라 통산으로 기간계산)
[예외 : 65세 이전사망, 천재지변, 인재로 사망시]
3.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
4.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내 대표이사 취임



상속인 요건에서 **납부능력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2019년 신설된 내용으로서**
 - 상속세 납부시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 내용
- **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서만 적용 [중소기업은 해당없음]**
- **납부능력 요건**
 -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 가액 ≤ [가업상속인 해당 상속세 × 2]**
 -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
 - **해당 가업 상속인에 대한**
 - a 상속재산
 - + ○ b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가액
 - ○ c 부담하는 채무
 - ○ d 가업상속재산가액
 - ② **가업상속인 해당 상속세**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가업상속인의 상속세 상당액

Q

자녀가 가업을 이어받을 상황이 안되는 경우
사위나 며느리가 이어받아도 되나요?

-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 종사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 * 위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인이 충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법인이나 개인 모두 가능

Q

가업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주식평가액** 전부가 공제되나요? 아니면 그 중 일부만 공제되나요?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전체가액 중 해당되는 부분만 인정됩니다

- 가업상속재산은 개인가업과 법인가업으로 구분

[개인가업] - 토지, 건물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비사업용토지는 제외**), 건축물, 기계장치등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다**

[법인가업] - 주식

- 가업 법인의 주식가액 \times (**사업관련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Q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사후관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2022.12.31. 이전상속은 **7년**, 2019.12.31 이전은 **10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1.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5년 이내 **40%** 이상 처분)
2.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미종사, 대분류 외 업종변경)
3. 상속인의 주식지분이 **감소**한 경우
- 4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5년평균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이 기준인원, 금액의 **90%** 미달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Q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세금 **증여세**
가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와 별도로, **생전**에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의 승계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
- 18세이상 거주자가 가업을 10년이상 영위한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600억원** 까지 **10억** 공제 후 10% 세율(**120억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내게 해 주는 제도 (조특법 제30조의6)

⇒ 일반 증여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세율 10%- 50% (30억원 초과시 50% 적용)

가.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의 범위

- 가업해당 주식가액 × (**사업관련** 자산가액/ 총자산가액)

나.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5년간**)

Q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업요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3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 증여자가 10년이상 영위했을 것
- 주식보유요건 : 10년이상 40%(상장은 20%) 이상 보유했을 것

2.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3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3. 증여자 요건

- 10년이상 경영한 60세이상 부모
- 가업영위기간 중 50%, 소급하여 10년 중 5년이상 **대표이사 재직**

Q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내용과 사후관리는 어떤것이 있나요?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승계주식의 과세가액 (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 (120억원 초과분은 2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 ▶ $(\text{과세가액} - 10\text{억}) \times 10(20)\%$

일반 증여재산과는 합산하지 않음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불가

창업자금 특례와 중복적용 불가 (납세자 선택)

증여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사전증여과표로 차감하지 않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장단점

✓ 단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불가

증여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

5년간 사후관리 미이행시
추징

✓ 장점

특례세율(10%, 20%) 적용으로 증여세
절감

일반 증여재산과는 합산하지 않음

요건 충족 시 추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5년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후관리합니다

1.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2.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Q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다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 허용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해당할 것**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필요없음**)
- 수증자(상속인)가 아래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1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
 - 2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을 유지**
 - 3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마무리

- 1 10년이상 기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가업상속공제 ”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미리 대비
- 3 추후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도 적극 활용
- 4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장기적인 사전 관리 가 필요

2026 국세동우회

2026년 정기주주총회실무

강사 법무사 신천수

목차

1. 법률개정(이사의 충실의무, 자기주식)(성과조건부주식)내용확인
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3.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해야 되는 것이지? 주주총회일정?
4. 주주명부, 주권이 발행된 회사, 주주총회기준일 및 배당기준일의 분리가능
5. 주주총회소집통지(통지방법. 의안의 기재방법)
6. 정기주주총회안건(재무제표승인, 배당, 이사선임, 이사보수, 자기주식, 스톡옵션)
7. 주주총회의 연기(계속회), 주주총회결의방법(정족수, 서면, 대리), 의사록인증
8.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주의사항(세감면전환, 종과 등)
9. 상속과 기업구조변경

Q. 2026년에는 ()이(가) 온다



Q. 법률개정(논의)

1.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
 -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보호 /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히 대우
2. 자기주식의 처분 및 보유(제341조의4이하)
 - 처분기한을 명시함 / 보유목적과 처분방법을 명시함(자기주식처분계획서)
 - 합병, 분할시 자기주식의 활용금지(자본시장법 2024, 상법 2025~26 논의)
3.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사외이사 → 독립이사 / 3분의 1이상)
4. 법률명칭 → (벤처기업에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근로자복지기본법)
5. 새로운 투자유형(벤투법) → (SAFE, CN, 투자조건부유자계약)

Q.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주요 차이점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주(사원)	有限責任 → 배당규제, 채권자보호, 자본유지규정	
株券발행	0	X(지시, 무기명식)
社債.公募	0	X
스톡옵션	0	X
외부감사	0	0(2018.11.1)
(현물)인가	0	X
이익배당	중간0/현물0	중간0/현물X
자기주식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1조의2
무상증자	주식배당. 자본전입	X

[물적/(유한책임)/인적(합명, 합자)]

- 유한책임 / 무한책임
- 지분복수주의 / 지분단일주의
- 준비금제도

[창업]

- 중소기업창업법시행령 제2조
- 지특법 제58조의3

[계약시 당사자를 확인하는 서류]

- 개인
- 교회, 절
- 사단법인, 재단법인
- 근로복지기본법 / 회사

[상장회사 - 자본시장법 제9조]

Q. 법인등기부등본(호력발생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600,000 주	금 300,000,000 원	.
보통주식	600,000 주		.
발행주식의 총수	10,000 주	금 5,000,000 원	2019.12.03 변경
보통주식	10,000 주		2019.12.0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5,000 주	금 50,000,000 원	.
보통주식	5,000 주		.
발행주식의 총수	12,000 주	금 120,000,000 원	2004.06.03 변경
보통주식	12,000 주		2004.06.0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000 주	금 120,000,000 원	2019.10.31 변경
보통주식	2,000 주		2019.11.13 등기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 원	.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0 원	.
	금 100,000,000 원	2015.06.16 변경 2015.06.16 등기
	금 200,000,000 원	2023.12.28 변경 2024.01.08 등기

- **주주총회일**
- 의사록인증
- 등기신청
- 등기완료일

- **주식회사 증자일**
- 유한회사 증자일

- **주식의 소각**
- 자기주식,상환주식

Q. 정기주주총회일정

1. 법률과 정관에 기재된 일정
 - 6주전(재무제표, 영업보고서 → 이사회승인 / 감사에게 제출)
 - 2주전(감사는 4주이내 → 감사보고서제출)
 - 1주전(공시)
2. 주주총회소집통지 - (자본금기준)(정관표시) 2주전 / 10일전
3. 주주총회소집기간단축 - 자본금 10억원이사 회사 → 기간단축? / 전원출석?
4. 통지하지 않고 주총을 할 수 있는 경우?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5.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 전자문서?

Q. 주주명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준일

1. 기준일

- 정기주주총회에 나오는 주주? / 배당을 받을 주주?
- 상법 제350조 3항 삭제? [12/31(정관-기준일), 2/10(기준일), 3/31(주총), 4/10(기준일)]

2.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자기주식의 쟁점

- 발생 → 제341조, 제341조의2, 증여, 단주
- 의결권 / 배당 / 소각

3. 과점주주의 변동에 따른 책임여부 확인

- 신주발행 / 자기주식 / 감자

주주명	주식수	주소	비고
갑	21,600주		scs2306@daum.net
을	9,900주		가제01~제09
B(주)	6,750주		(상호주)
정	6,750주		RCPS
삼성(주)	5,000주		자기주식
합계	50,000주		

Q. (정기주주총회)기준일 / 배당기준일

- ❖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자증권법)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관 제25조(기준일)에 의거하였습니다.
-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 **당사의 배당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50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향후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Q. 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

1. 일 시 : 2026년 3월 28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서울시 서초동 100 / **천안시**
3. 회의목적사항
 - ❖ 보고안건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선임보고 등
 - ❖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2025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배당승인의 건(현금배당 / 주식배당)**
 - 제3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정관개정이 있는 경우 **정관개정안 첨부**)
 - 제4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이사, 감사 명칭 등 통보**필요 없음/감사선임건과 분리)
 -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승인의 건**(감사보수한도와 분리요)
 -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건
4. **서면투표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Q. 안건_이사의 보수(1)

1. 등기되어 있는 영업담당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정하는가?
2.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부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수를 주총에서 정하는가?
3. 등기되어 있으나 상근하지 않는 이사(사외이사 등)는 급여지급이 가능한가?
4. 이사에게 차량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보수에 해당하는가?
5. 보수승인이 필요한 임원의 범위?(상법 / 법인세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1항)

Q. 안건_이사의 보수(2)

1. 퇴직급여소급적용의 효력? (대법원 2016.2.18. 2015두50153)
 - 규정을 신설하여 퇴직금지급규정의 소급적용은 문제 없는 것인지?
 - 기존 규정이 있음에도 감액을 하여 소급적용
2. 보수지급결정에 대한 특별이해관계있는 자?(매일유업)(서울중앙 2024.5.31. 2023가합66328)
3. 보수지급규정이 있음에도 → 이사의 보수는 매년 결의가 필요한가요?
4. 부의안건
 -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승인의 건(감사보수한도와 분리요)

Q.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

▣ [책임주체]

- 이사
- 사실상이사
- 지배주주

▣ [의무내용]

- **위임**
- 충실의무
- 경업, 겸직금지의무
- 자기거래금지의무
- 비밀유지의무
- 기회유용금지

▣ [책임발생]

- 제399조
- 제401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배임죄
-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

▣ [책임배제/제한]

- 전주주의 동의
- 책임해제
- 정관에 의한 책임감경
- 경영판단의 법칙

□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Q. 안건_이사의 책임에 대한 관리필요성

❖ 이사 甲은 도장을 회사에 보관하고, 회사가 필요한 경우 의사록 날인을 허락했다.

1. 이사회구성(정관상 이사의 수 제383조) / 이사회개최방법
2. 이사회는 1년에 몇회 개최해야 하는지?
- 제374조 및 제393조
3. **이사의 충실의무와 의사록작성시 주의사항**
4. 의사록에 기명날인/서명하는 사람
- (주총의사록 제373조 / 이사회 의사록 제391조의3)

Q. 안건_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관리

❖ 대표이사는 2022년 2억, 2023년 2억, 2024년 2억의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1. 차용증
2. 이사회 의사록
3. 10억으로 평가된 자기 주식을 담보로 제공
4. 자기주식 / 유상감자 / 기타 자산의 제공
5. 세무적인 처리는 세무사/회계사와 상의

Q. 배당

❖ 배당금지급청구권

- (회사 또는 대주주의 배당금지급결정의무는 없음)(2010다53792)
- 정관(배당의무,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기재시 지급의무(20220819/2020다263574)
- (→ 소수주주보호방안)

❖ 정기배당(제462조) / 중간배당(제462조의3) / 분기배당(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 현금배당 / 주식배당(제462조의2) / 현물배당(제462조의4)

❖ 불균등배당(초과배당 - 상증법 제41조의2)

❖ 상법 제350조 3항 삭제 → 정기주총기준일과 배당기준일

Q. 안건_준비금의 감소(감액배당)

(주주총회)제1호의안 준비금의 처분(잉여금전환_준비금의감소)승인의 건

의장은 첨부한 재무상태표를 주주들에게 배포하고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상법 제 4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부분중** 금 [3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으므로 승인 가결한다.

제1호의안 정기배당 / 중간배당의 건

의장은 2025년 5월 20일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일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 금원 [3억원]을 2026년 5월 1일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진행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으므로 승인 가결한다.

Q. 안건_자기주식취득과 관리

- ❖ 자기주식취득 원칙적허용(대법원 2012두27091)
- ❖ 자기주식취득목적(대법원 2001두6227)
- ❖ 정관개정의 필요성 / 주권발행의 필요성 / 유한회사
- ❖ 증여계약후 자기주식의 취득(대법원 2015두46963)(대법원 2017두57516)
- ❖ 균등취득의 의미(시행령 제10조 4호)
- ❖ 잉여금의 의미(서울고등 2017누35631, 대법원2017두6337) / 가지급금상계(서면법규과-168)
- ❖ 자기주식취득(소각)과 과점주주발생여부

Q. 안건_자기주식취득과 관리(법률개정논의)

- ❖ 처분을 의무화 → 취득후 1년
- ❖ 보유시 보유목적 + 처분계획을 명확히 → 자기주식처분보유계획서(주총승인)
- ❖ 처분방법 → 주주균등 / 정관에 정하는 방법 등
- ❖ 보유시 관리 방법 → 주주총회안건 등
- ❖ 개정의 결과여부를 떠나 정관개정의 필요성 → (보유목적 + 처분방법)

Q. 안건_자기주식의 활용(합병,분할), 개정안에서는 금지

합병	
존속회사(A)	소멸회사(B)
주주 갑	주주 을
주주 B	주주 A (포합주식), 주주B
적격합병 - 국세청(법인세과-1039)	



합병	
존속회사(A)	소멸회사(B)
주주 갑	주주 을
주주 A (합병으로 변경된 자기주식)	주주 A (포합주식)
주주 을, 주주 A(▲)	주주 B(소멸)

분할	
존속회사(A) - 300	신설회사(B)
주주 갑 200	
주주 A 100	
적격분할 - 국세청(서면법규과-496)	



분할	
존속회사(A) - 270	신설회사(B) - 30
주주 갑 180	주주 갑 - 20
① 주주 A 90	① 주주 A - 10
② 주주 B (100-90) 10 (자산이전에 따라 주주)	

Q. 정기주주총회연기(계속회) / 결의방법 등

개최일자	구분	의안	가결여부
2025.03.28	정기	제1호 의안: 제30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계속회 개최 제안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025.04.20	계속회	제1호 의안: 제30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 의사정족수(발행주식 4분의 1이상 출석) - 무의결권주식 / 자기주식 / 3%룰
- ❖ 결의정족수(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 이해관계있는 주식
- ❖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 (100주, 자기주식 10주) → 90주기준으로 4분의 1이상출석

Q. 의사록인증시 필요서류(인증의 필요성)

- ❖ 의사록은 반드시 인증이 필요한 이유?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
- ❖ 주총의사록 인증시 인증을 위임한 사람 → 주주와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
- ❖ 이사회 의사록 인증시 인증을 위임한 사람 →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 감사
- ❖ 의사록 2부(3부) - 날인과 간인
- ❖ 주주, 이사 인감증명서(온라인발급X) / 주민등본(초본) - 3개월(2개월)

Q. 신주가 발행되는 유형

유형	권리자	결의기관	주금납입	효력발생일
유상증자(주주)	주주	이사회(주총)	○	납입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제3자	이사회(주총)	○	납입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주주	이사회	대차대조표	기준일(결의일)
주식배당	주주	정기주총	대차대조표	결의일
전환사채	사채권자	X	청구서	청구일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소지자	X	청구서+납입	납입일
스톡옵션	권리자	X	청구서+납입	납입일
전환주식	전환권자	X	청구서	청구일
기 타(중간배당, SAFE)	(조건부신주인수, 조건부지분전환, 투자조건부용자계약)			

Q.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특허나 기계를 출자하고 주식 교부받기-현물출자)

❖ (제421조2항)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조건부주식인수계약-SAFE]

a. 상법개정전 → 현물출자대상(금전채무, 부동산, 기타 유형자산, 특허 등 무형자산)

b. 상법개정후 → 현물출자대상(부동산, 기타 유형자산, 특허 등 무형자산 / 금전X)

c. 실무상 → 현물출자대상(인가?? → 부동산 △, 특허 등 무형자산 △)

d. 실무상문제 → 조특법적용X, 평가의 적정성, 이해관계인(주주,채권자)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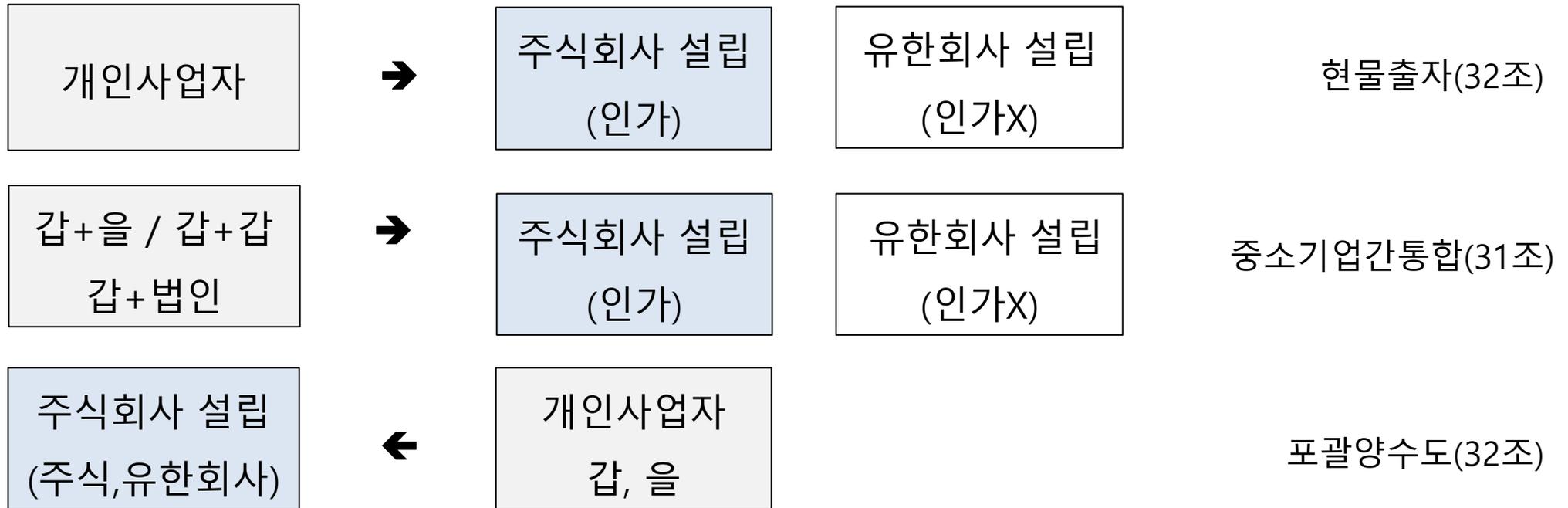
Q. 신주발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 ❖ 주식이 **많이 발행된 경우** → (일부감자)
- ❖ 주식이 **적게 발행된 경우** → (당해주식 감자후, 재진행)
- ❖ **주식배당의 한도** → (상법 배당총액의 2분의 1초과X)(전액주식배당 가능)
- ❖ 종류주식발행시 주식배당 /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 **교부하는 주식(착오)**
- ❖ 기존 주식중 일부를 **다른 종류주식으로 변경**하는 방법 → 보통주를 우선주로

Q. 정관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근로자에 주식교부방법)

1. **무상증여**(△)(주주 → 회사 → 근로자)/(부여주식에 대한 양도제한 등 조건)
2. **주식매수선택권** : 정관 + 등기 → (근로자 → 주금납입 → 주주)
3.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4. **성과조건부(자기)주식교부계약**(근로자 → 주식)(벤처기업법) RSA, RSU
- 벤처기업 / 자기주식취득재원(자본금제외 금액한도) / 교부대상자(외부전문가X)
5. 사내근로복지기금 / 우리사주조합

Q. 법인전환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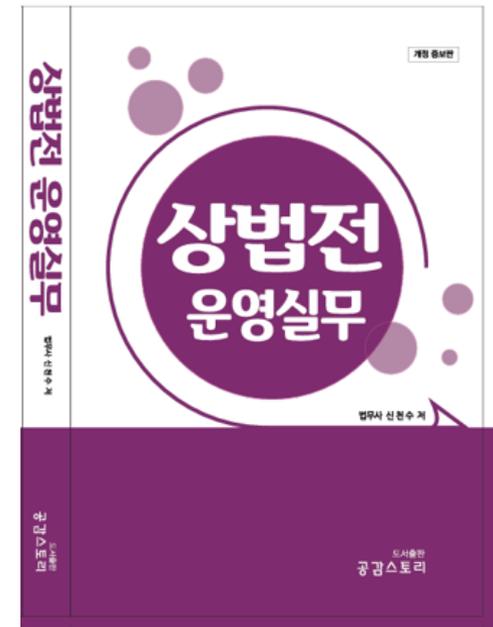
- ❖ 순자산가액 / 중과회피를 위한 본점설치의 위험성
- ❖ 양도소득세이월과세 / 취득세감면 0 → 지특법 제57조의2 ③④(취득세감면)
- ❖ 취득세감면 X → 부동산임대업(지특법 57/2 4항 5호), 일반증자 등 / 과점주주

Q. 상속과 기업구조변경

- ❖ 협의분할시
 - 미성년자(특별대리인_민법 제921조) / 성년(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 ❖ 채권자취소소송 → (형식은 포기)
 - 상속포기(2011다29307) / 협의분할(2024다208315)
- ❖ 상속협의분할전 주식의 공유(상법 제333조)
- ❖ 상속포기 → (상속인에 의한 진행 Δ) → 직무대행자(일시이사_상법 제386조②)
- ❖ 농업회사법인 → (주주인 농업인) → 지분상속
- ❖ 1순위 상속인에 대한 유증 / 2순위 상속인에 대한 유증
- ❖ 상속포기(한정승인)와 상속세산고기한의 차이 /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인생의 이익잉여금을 알아가는 000

- 제6회 법무사시험합격(2000년)
- (전) 서울법학원,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비송절차법 강사
- (전)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강사(기업법실무)
-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 (전) 그레이프시드코리아(주) 인사팀장
- (전) (코스닥) 제이엠아이(주) 감사위원(사외이사)
- (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교육위원
-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상담자문위원
- (저서) 회사법실무(2026), 상법전운영실무(2025)
- (현) 법무사 신천수, 심민정 / 김재환 사무소 대표(서초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14, 401호(서초동, 성보빌딩)
[전화 : 010.3241.2306, 이메일 : scs2306@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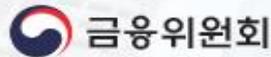
밸류쇼핑에서 클릭 한번으로 부동산가격 조회!

전국부동산 자동가격 시스템

“국세동우회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감정평가
수수료 20% 할인

감정평가 의뢰
02-569-7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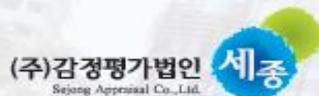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동산 자동가격산정 방법
특허출원



PNU를 활용한 부동산 유사사례
DB 생성방법 특허출원



네이버 검색창에 밸류쇼핑을 검색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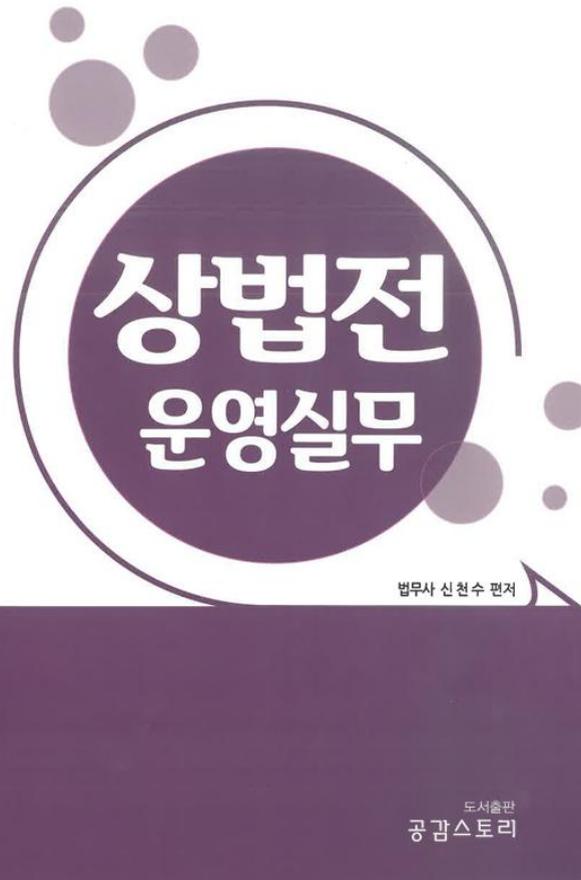
NAVER

개정증보3판

기업관련 핵심 쟁점을 Q&A로 해결한
회사법 실무

법무사 | 신천수

(주)경제법륜



법무사 신천수

- 회계사 학원 상법 강사
- 한국생산성본부 기업법 실무 강사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교육위원
- (코스닥)제이엠아이(주) 감사위원
- 회사법실무(2021,2022 공감스토리)
- 상법전 운영실무(2024 공감스토리)
- 회사법실무(2026 (주)경제법륜)

법무사 신천수 사무소
(신천수, 김재환, 심민정)

대표법무사 신 천 수 (Shin Cheon Soo)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4, 401호(서초동, 성보빌딩)
전 화: 02)3474-2306,2308 팩 스: 02)3474-2307
핸드폰: 010-3241-2306 E-mail:
scs2306@hanmail.net